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35호, 2026.6.2.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안 2조의 3)

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고, 유사

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바.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직원의 파견 및 수당 지급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3~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

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3부터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2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실무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의4(과건 요청)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과건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조사·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의6(수당 등) 위촉위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u>
<u>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신설></u>	<u>제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u>

<신 설>

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 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7일 -----

-----, -----
-----.

③ -----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4호의 위원을 포함한다) -----
-----.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③ (생략)

<신설>

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국무조정실장이 -----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3부터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라 한다)을 둔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의4(파견 요청)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조사·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

<신 설>

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
에게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
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
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사항
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의6(수당 등) 위촉위원, 제5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실
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실
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
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
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39